

대회승인및운영규정

제정	2018.	2.	27.
개정	2019.	2.	28.
개정	2020.	1.	29.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6.	3.
개정	2021.	5.	3.
개정	2024.	3.	6.
개정	2026.	1.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4조(사업) 제1항제5호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의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 가맹 또는 등록 단체(이하 “협회 관계단체”라 한다) 및 등록팀, 지도자, 선수, ‘심판, 임파이어, 경기운영관, 계측관’(이하 “경기임원”이라 한다)과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승인하는 국내 개최 대회에 적용한다. 단, 국내에서 개최되는 종합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종합전국대회(전국체전, 소년체전, 해양제전 등)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대회주체) ① 대회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최 : 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2. 주관 : 주최 기관(단체)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3. 후원 : 대회에 필요한 재정, 시설, 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제4조(대회의 구분) ①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제대회
2. 전국대회
3. 지역대회

② 전국대회는 정관 제4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서 주최하며, 개최지 시·도협회에서 주관한다.

③ 전국규모연맹체의 경우 소관 범위 내의 대회에 한하여 주최할 수 있다.

④ 생활체육 국제·전국규모대회와 지역대회는 협회 관계단체가 주최할 수 있다.

제2장 승 인

제5조(대회승인) ①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 한하여 협회 관계단체가 대회 승인 신청을 한다.

② 대회를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대회개막 3개월 전까지 협회에 ‘대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회 개최 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 신청서(공문)
2. 개최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제5조의2(승인료) ① 대회 승인을 통보받은 협회 관계단체는 별표 3에 따라 승인료를 대회 시작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06.>

② 협회는 승인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요트 종목 홍보
2. 경기임원 양성 사업
3. 경기규칙 관련 번역 및 발행 사업
4. 경기인등록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 사업
5. 경기운영용기구 개선 및 대회 지원 사업

제6조(대회 승인의 위임) ① 지역 대회의 경우 시도협회에 대회의 승인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받은 대회라 할지라도 시도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대회를 승인하여야 하며, 개최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전·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② 승인을 위임받은 대회에서는 대회 명칭에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뜻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대회 승인의 취소 또는 조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회의 취소 또는 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승인을 위임한 대회에도 적용된다.

1. 이 규정 위반 등 기존 대회의 운영에서 대회 승인을 취소 또는 조정해야 할 현저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2. 요트 발전 차원에서 대회 빈도나 방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경우 대회 승인 취소 및 승인 위임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승인하지 않은 대회) ① 승인하지 않은 모든 국내개최 대회는 월드세일링(이하 “WS”라고 한다) 규정과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된 대회이다. <개정 2020.01.29.>

② 협회 관계단체 및 등록팀, 지도자, 선수, 경기임원은 승인하지 않은 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는 각종 지원 사항에 대

한 불이익 처분과 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제재 할 수 있다.

③ 승인하지 않은 대회를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한 단체는 그 승인하지 않은 대회의 종료일부터 3년간 대회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01.29.>

④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한 등록팀, 지도자, 선수 및 경기임원은 그 승인하지 않은 대회의 종료일부터 2년간 협회 및 협회관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가 거부된다. <신설 2020.01.29.>

제9조(보고) ① 승인 대회는 대회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회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 위임대회는 개최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전·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제3장 운 영

제10조(유치신청) ① 협회가 유치하여 주최하는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협회는 개최 2년 전 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치 신청서(공문)
2. 개최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3. 시·도요트협회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4. 유치희망도시 이행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유치희망도시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서식)
6. 유치희망도시 시설물 사용 허가서(별지 제5호서식)

제11조(개최지 결정) ① 개최지는 신청 시도협회의 유치신청서류를 대회위원회

에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필요시 사전답사를 할 수 있다.

② 개최지 시도협회는 이사회의 유치심사, 스폰서, 마케팅 등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제출한 유치신청서에 근거한 세부 이행 계획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최 1개월 전까지 준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2021.05.03.>

③ 협회와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거나 대회가 무산된 경우에는 협약 및 유치계획 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관계를 보전해야하며 개최를 반납한 연도부터 향후 5년간 유치신청을 할 수 없고, 협회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의2(심사료) 삭제 <2026.01.30.>

제12조(상업적 권리) ①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후원(협찬)사 선정권, 방송중계권 판매, 광고 판매, 입장료 징수, 마케팅, 디지털 및 비디오 등 모든 상업적 권리는 주최 기관(단체)에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주최, 주관, 후원은 상업적 권리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회 엠블렘, 마스코트 등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로고, 후원 및 광고 등 마케팅 권한을 협회에 사전 서면 승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대회종료 후 모든 권리는 협회로 귀속된다.

④ 유·청소년 연령의 팀이 참가하는 대회의 경우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에 유해한 상품 또는 그 제조회사를 대회 명칭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 해당 상품의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제13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각 대회별 개최 시기 및 일정은 대회주체 간 상호 협의 후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전국대회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와 종목별 국제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년도에는 전국대회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조직위원회) ① 대회 주관 기관(단체)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대회장은 주최 기관(단체)장이 되며, 조직위원장은 개최지 주관 기관(단체)장이 된다.

③ 대회임원은 주최, 주관 기관(단체) 임원으로 구성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운영되며 대회종료 후 협회에 결과 및 정산보고(별지 제6호서식) 제출 후 해산한다.

제15조(경기임원) ① 협회 주최·주관 대회의 심판, umpa이어, 경기운영관, 계측관 구성은 협회 해당위원회의 결정으로 배정하여 구성한다.

② 경기임원은 해당 연도 월드세일링(WS) 세일링경기규칙 및 해당 클래스규칙에 의하여 대회를 운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위원장은 대회 종료 후 대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1. 심판/umpa이어위원장: 심판/umpa이어결과보고서
2. 경기위원장: 경기운영결과보고서
3. 기술위원장: 계측결과보고서

제16조(수당및여비 지급) ① 협회 주최·주관 대회의 조직위원회 및 경기임원 수당 및 여비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종합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종합전국대회(전국체전, 소년체전, 해양체전 등)는 해당 대회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29.>

제17조(경기종목) ① 전문선수를 위한 전국대회의 클래스 및 부별, 종별의 세부

종목은 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결정하며, 결정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2021.05.03.>

② 기타 대회의 세부종목 및 부별 및 종별은 각 대회별 대회공고에 의한다.

제18조(대회공고) ① 대회 주최 기관(단체)은 주관 및 후원 기관(단체)과 상호 협의하여 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등을 월드세일링(WS) 세일링경기 규칙의 부칙J 대회공고와 세일링세칙, 부칙K 대회공고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대회개최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② 주최 기관(단체)은 필요할 경우 참가자로부터 대회 참가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주최 기관(단체)은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참가자의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 가입 여부를 대회 참가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9조(대회참가) ① 대회에 참가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대회공고(NoR)의 참가 신청 방식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참가 신청한 개인 및 단체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 등 협회 규정과 대회공고 및 세일링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③ 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 도중에 기권한 선수 및 단체는 해당되는 차기연도 대회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시상) ① 개인시상은 종목별, 부별 1위, 2위, 3위에게 각각 메달과 상장을 수여한다.

②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에서는 시도종합시상을 실시하며 입상시도에게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한다.

③ 각각의 대회 특성에 따라 시상품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제21조(경기기록관리) ① 주최 기관(단체)은 경기기록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주관 기관(단체)은 대회 종료 후 경기 기록지를 협회로 제출한다. <개정 2020.01.29.>

- 제22조(소청 및 처리)** ① 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 ② 조직위원회는 협회와 WS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보 칙

- 제23조(후원명칭 등 사용에 관한 권리)** ① 협회 주최·주관대회 및 승인대회는 협회명칭과 로고를 후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승인을 위임받은 대회의 경우 승인 시도협회의 명칭과 로고를 후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협회 관계단체 및 등록팀, 지도자, 선수, 경기임원은 월드세일링(WS) 및 대한체육회의 로고 및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사 및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해당 단체 또는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때부터 5년간 대회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협회 사업 참여 제한 등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부 칙(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대회규정, 대회공인 및 승인 규정, 국제·국내대회 여비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국대회규정, 대회공인 및 승인 규정, 국제국내대회 여비규정은 폐지되며 이 규정이 대신한다.

부 칙(2019.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경기종목의 한시적 운영) 이 규정 별표1 전문선수 전국대회 세부종목에 윈드서핑 RS:One 남자 고등부와 여자 고등부를 추가하여 2020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 칙 (2021.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의2(승인료)와 와 제11조의2(심사료)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03.06.>

수당 및 여비 지급표

구 분		수 당 (1일)	국내여비		
			숙박비 (1박)	식비 (1일)	왕복교통비 (1회)
국제 경기임원	국제대회	200,000원	1인 1실	25,000원	실비
	국내대회	150,000원	1인 1실	25,000원	실비
국가 경기임원	위원장	160,000원	1인 1실	25,000원	실비
	경기수역장	140,000원	1인 1실	25,000원	실비
	심판위원	120,000원	1인 1실	25,000원	실비
	경기위원	120,000원	2인 1실	25,000원	실비
	계측위원	120,000원	2인 1실	25,000원	실비
조직위원회	위원장	160,000원	1인 1실	25,000원	실비
	담당관	120,000원	2인 1실	25,000원	실비
기타	운영요원	80,000원	2인 1실	25,000원	실비
	보조요원	60,000원	2인 1실	25,000원	실비

- 비고 1. 경기임원: 심판/엄파이어, 경기운영관, 계측관으로 해당 자격 보유자
2. 수당: 현지교통비, 통신비, 생필품, 통행료, 위험수당 등 포함
3. 숙박비: 현지 모텔 급 실비결제(대회규모, 예산 및 숙박단가에 따라 호텔 급 가능)
* 예산 또는 여건에 따라 2인1실 또는 다른 형태의 숙박을 제공할 수 있음.
4. 교통비: 대중교통(철도, 버스, 선박, 항공, 자동차 순) 실비지급
5. 교통비산출기준: 주민등록지 주요 교통시설부터 개최 시군구 주요 교통시설(터미널, 역, 공항) 왕복
6. 외국인의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항공권을 지급할 수 있음.
7. 대회 예산 및 여건에 따라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8. 반일 근무 시 수당의 1/2을 지급한다.

[별표 2]

경기임원 배정 기준표

	위원장	수역장	위원	운영요원
WS국제자격증 (IRO, IJ, IU, IM)	O	O	O	O
전문스포츠 지도사 1급	O	O	O	O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O (경력 10년 이상)	O (경력 5년 이상)	O	O
생활체육 스포츠 1급	X	O (경력 5년 이상)	O	O
생활체육 스포츠 2급	X	O (경력 10년 이상)	O	O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X	O	O	O
국가대표 경력	X	O (경력 5년 이상)	O	O
국가대표 후보선수 경력	X	X	O	O
청소년대표 경력	X	X	O	O
일반대회참가 경력 2년 이상	X	X	O	O
기타	X	X	X	O

비고 1. 대회의 경기임원 참여 희망자 중 위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 상위 요건을 갖춘 자로 배정할 수 있음.

[별표 3] <신설 2024.03.06.><개정 2026.01.30.>

승인료 기준표

구분	대상	대회등급		책정금액	대회등급 구분 기준
승인료	승인대회	국제 대회	1급	총 예산의 5% (최대 5,000만원 최하 3,000만원)	월드세일링 주최 세계선수권, 월드세일링 스페셜이벤트 대회 중 총 예산 5억 이상
			2급	총 예산의 5% (최대 2,500만원 최하 1,000만원)	월드세일링 주최 세계선수권, 월드세일링 스페셜이벤트 대회 중 총 예산 5억 미만
			3급	2,000만원	아시아요트연맹 또는 국제클래스협회 주최/승인 대회 중 총 예산 5억 이상
			4급	총 예산의 3% (최대 1,500만원 최하 600만원)	아시아요트연맹 또는 국제클래스협회 주최/승인 대회 중 총 예산 5억 미만
			5급	500만원	국내 단체 주최/승인 국제대회
		전국 대회	생활	총 예산의 3% (최대 300만원, 최하 80만원)	
			전문	총 예산의 3% (최대 300만원, 최하 80만원)	

- 비고 1. 위 국제대회 등급분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함.
2. 승인 전국대회 중 생활과 전문 통합 대회의 경우 생활대회 기준을 적용함.

[별지 제1호서식]

요트대회 개최 계획서

1. 대회개요

- 가. 대회명
- 나. 대회목적
- 다. 대회기간
- 라. 대회장소
- 마. 세부종목 및 참가자격

2. 운영단체

- 가. 주최
- 나. 주관
- 다. 후원

3. 참가팀

- 가. 참가대상
- 나. 예상참가규모
- 다. 시상계획

4. 개최지 정보

- 가. 주관단체 개최 경험(실적)
- 나. 개최장소 적합성: <지리적 위치, 환경, 기후, 숙박시설 수용 등>
- 다. 재원조달방법
- 라. 예산(안)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예시)	금액
		용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등 제작비 광고료 회의비 기타경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항공료 시상금	
합계		합계	

5. 조직위원회 <예시>

- 가. 대회장: 주최 기관(단체) 장
- 나. 대회임원: 주최·주관 기관(단체) 임원
- 다. 조직위원장: 주관 기관(단체) 장
- 라. 운영위원장: 주관 기관(단체) 실무임원 또는 행정책임자
- 마. 총무 담당관: 행정, 시설, 교통, 숙박 담당 등의 인원 구성
- 바. 경기지원 담당관: 경기운영, 심판, 기술, 경기기록 담당 등의 인원 구성
- 사. 홍보 담당관: 대외협력, 언론보도, 온라인 담당 등의 인원 구성
- 아. 안전(의무)담당관

6. 경기임원

- 가. 심판/엄파이어위원회
- 나. 경기위원회
- 다. 기술위원회

7. 시설계획

- 가. 해상수역
 - 1) 경기수역의 위치, 면적, 수심 등
 - 2) 연간 평균 풍향 및 풍속
 - 3) 암초, 그물, 선박항로 등의 장애물 여부 및 보완계획
- 나. 육상시설
 - 1) 경기정 보관 장소(강풍, 악천후 고려)
 - 2) 경기정 세척시설(약 30척당 1호스 이상)
 - 3) 경기정 및 운영보트/코치보트 상·하차 공간, 리프팅시설 등
- 다. 론칭시설(슬립웨이)
 - 1) 경기정(딩기) 출입항 경사로(폭 30~150m/ 최대경사 10°/ 미끄럼방지)
- 라. 해상계류시설
 - 1) 운영정 및 코치보트 정박 시설(폰툰)
 - 2) 킬보트 대회 경우, 경기정 추가 계류시설
- 마. 기타시설
 - 1) 계측시설(딩기 경우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
 - 2) 선수시설(선수휴식라운지,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 3) 사무시설(대회본부, 심판실, VIP실 등)
 - 4) 공식게시판, 육상신호마스트 등

8. 경기물품 조달계획

가. 운영보트(킬보트, RIB보트 등)

나. 경기용품(구명동의, 무전기, 마크, 앵커, 로프, 방향계, 풍속계, 풍향계, GPS, 신호기세트, 에어혼, 녹음기, 망원경, 구급함, 화이트보드 등

9. 안전대책

가. 의료지원 계획(구급차 배치, 의료인력, 지정병원 등)

나. 혹서기/혹한기 등 기상예보 시 대책

다. 일반 안전 및 시설점검 대책

라. 주차 계획

마. 안전인력 운영 계획

10. 홍보계획

가. 언론홍보, 중계 등 계획

나. 공식행사(개·폐막식) 계획

다. 문화행사 계획

라. 기타

11. 대회공고(Notice of Race) : 첨부

[별지 제2호서식]

○○ 요트협회 이행각서

제 ○○회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요트협회는
대한요트협회의 상기 대회 유치 심사에 대한 모든 결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요트협회장

성명 ○ ○ ○

서명 _____

[별지 제3호서식]

유치희망도시 이행각서

제 ○○회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 군)는
(은) 대한요트협회의 상기 대회 유치 심사에 대한 모든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도지사, 군수)

성명 ○ ○ ○

서명 _____

유치 희망도시 재정보증서

제 ○○회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 군)는
(은)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개최에 필요한
예산 (“요트대회 개최 계획서” 재정 부문 명시)을 지원
할 것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도지사, 군수)

성명 ○ ○ ○

서명 _____

유치희망도시 시설물 사용 허가서

제 ○○회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 군)는
(은) 동 대회 개최 시 대회 조직위원회의 경기장 등 주
요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도지사, 군수)

성명 ○ ○ ○

서명 _____

[별지 제6호서식]

대회 결과 보고서

1. 대회명
2. 기간
3. 장소
4. 주최
5. 주관
6. 후원
7. 참가규모(세부종목 별)
8. 정산내역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예시)	금액
		용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등 제작비 광고료 회의비 기타경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항공료 시상금	
합계		합계	

9. 시상내역: (첨부: 경기기록지 원본)
10. 평가(경기력, 경기운영, 심판운영, 시설운영, 의료지원, 안전, 질서, 홍보, 행사 등)
11. 개선사항 및 특이사항

작성일: _____

단체명: _____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귀중